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 철 순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4년 10월 13일
- 발 의 자 : 이재광 의원 외 7인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4년 10 월 13일
  - 상정일자 : 2004년 10 월 15일
-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 4. 주요골자

##### 가.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지정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기타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함.

##### 나. 구성 등(안 제3조)

-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 교육, 종교, 언론, 문화·예술 및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 의장이 위촉함.

##### 다. 임기 등(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06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라. 회의(안 제5조)

- 분기별로 시행하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함.

##### 마. 실비보상(안 제6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되,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 및 입법사항 심사 등에 관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인등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외부인의 전문지식을 구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조례와의 상충되는 내용도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과의 사전협의 결과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지침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의견 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 조문별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1) 안 제2조(설치 및 기능)는 구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문, 지정 연구과제 수행, 기타 의회 기능향상에 필요한 의견제시 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에 적합하며
- 2) 안 제3조(구성 등)에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 교육, 종교, 언론·문화·예술,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 중에서 위촉하게 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구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3) 안 제4조(임기 등)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4) 안 제6조(실비보상)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며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 타 위원회에서도 출석위원 수당, 용역 및 연구과업 수행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 6. 관련법규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규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